

#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9,360,000	21,280,800
일반회계	635,600,000	19,068,000
특별회계	73,760,000	2,212,800
공기업특별회계	52,700,000	1,581,000
수도사업특별회계	28,200,000	846,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500,000	735,000
기타특별회계	21,060,000	631,800
수질개선특별회계	4,690,000	140,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00,000	84,0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380,000	41,4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030,000	90,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10,000	39,3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00,000	42,000
기반시설특별회계	360,000	10,8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000,000	30,000
주차장특별회계	5,090,000	152,7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7,32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